

의안번호	2212931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 9. 24.
추계번호	25G50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경우, 2027년 54.1억원, 2032년 20.8억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371.9억원(연평균 6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안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의 세수효과는 2027, 2028년 2년간 발생
- 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2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누적	연평균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60조제2항)	-1.3	-1.3					-2.5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61조제3항)	-5.5	-5.5					-11.0	-5.5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1항)	-9.7	-18.4	-17.9	-12.7	-8.2	-3.9	-70.8	-11.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2항)	-37.6	-78.0	-72.3	-50.9	-31.9	-16.9	-287.6	-47.9
계	-54.1	-103.2	-90.2	-63.6	-40.1	-20.8	-371.9	-62.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수혜내용: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2	안 제61조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수혜내용: 본사·주사무소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3	안 제85조의6제1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4	안 제85조의6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	안 제61조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3	안 제85조의6제1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	안 제85조의6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단, 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세액감면 규정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32년까지 발생
 - t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년)간 100%, 이후 2년(t+4~t+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
 - 따라서 2026~2028년의 신규 인증기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7~2032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2027년 신규 인증기업		100% 감면			50% 감면	

- (안 제60조제2항)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2025년 실적(매년 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대도시 밖 공장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평균 감면실적은 최근 5년('21~'25년) 중 특이치인 2021년(0.1억원)을 제외하면 1.3억원 수준
- (안 제61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4년(2022~2022년)의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2~2025년(잠정) 법인세 감면액 평균: 5.5억원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근 5년('19~'24)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1기업당 감면액은 2024년 신고기준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향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연차별로 유지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대도시 밖 공장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대도시권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 단, 위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제외함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5년(잠정치) 1억 원

[표 3] 대도시 밖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실적: 법인세, 2021~2025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법인세	0.1	1	2	1	1

주: p는 잠정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2021년 실적을 특이치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2022년~2025년(잠정)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세수효과 추계
 -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 감면액: 1.3억원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5년거치 5년 분할납부)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추계결과)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

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1.3억원, 2028년 1.3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2.5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1.3	-1.3	-2.5	-1.3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 동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익금불산입하며, 이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

– 다만,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법인세	2	5	7	5	5

주: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최근 5년(2021~2025년) 중 2021년을 제외하고는 5~7억원 수준이므로, 최근 4년(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5.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2022~2025년(잠정) 법인세 감면액 평균: 5.5억원
- (추계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5.5억원, 2028년 5.5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11억원(연평균 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5.5	-5.5	-11.0	-5.5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1항)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7.12.31. 제정된 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 기한 및 감면을 변경,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08.12.26. 일부개정: 인증취소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text{감면 한도} = 1\text{억 원} + (\text{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천만 원})$$
 -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4)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1.1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85.3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1.5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표 7]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68.9	84.3	75.5	75.6	70.0
소 득 세	2.2	1.0	1.2	0.7	1.5
합계	71.1	85.3	76.7	76.3	71.5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2년('26~'27)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2019년 391개에서 2024년 236개로 감소
 - 2019~2024년간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연평균 감소율: 8.8%

[표 8] 신고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사회적기업 수 ¹⁾	391	429 (9.7)	500 (16.6)	428 (△14.4)	371 (△13.3)	236 (△36.4)	△8.8

주: 1) 사회적기업포털 조회 결과('25.1.31.기준) 법인 외 개인사업자 확인 불가

2) ()안은 신규 사회적기업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사회적기업의 감소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27년 신규 사회적기업 수를 추계한 후,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 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 84.0%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
 - 2024년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100%) 및 2023 과세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98.0%)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 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9] 향후 신규 사회적기업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27년

(단위: 개)

	2026	2027
신규 사회적기업 수(A)	196	179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90	82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10]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 %)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기업 수(A)	236	371	428	500	429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236	364	404	452	375
비중(B/A×100)	100.0	98.1	94.4	90.4	87.4

자료: 사회적기업포털('25.1.3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11]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개)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90	89	85	82	79	
2027년 인증		82	81	78	74	72

주: [표 5]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6]에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4년 신고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11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11억 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합계(71.43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664개)으로 나눈 값

[표 12] 개정안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9.7	9.5	9.2	4.4	4.2	
2027년 인증		8.9	8.7	8.3	4.0	3.9
합계	9.7	18.4	17.9	12.7	8.2	3.9

주: [표 7]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9.7억 원, 2032년 3.9억 원 등 6년간 총

70.8억 원(연평균 11.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85조의6 제1항)	9.7	18.4	17.9	12.7	8.2	3.9	70.8	11.8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5조의6제2항)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2010.12.27. 신설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감면 한도 = 1억 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현행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3)간 감면 규모는 2020년 신고기준 72.0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74.7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신고기준 76.0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사업자에서 발생

[표 14]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법 인 세	55.7	63.3	47.5	47.3	66.0
소 득 세	16.3	11.4	7.1	6.3	10.0
합계	72.0	74.7	54.6	53.6	76.0

자료: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2년('26~'27)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본점) 수는 2019년 82개에서 2024년 143개로 증가
 - 2019~2024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11.8%

[표 15]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인증 표준사업장 수	82	97 (18.3)	119 (22.7)	94 (△21.0)	109 (16.0)	143 (31.2)	11.8

주: ()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2027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2024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46.0%
 - '24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 105.8만 개, 총부담세액 발생법인 수: 48.7만 개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 비중: 84.0%
 - '24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신고 건수: 238.8만 개, 과세소득자 수: 200.5만 개

- 2024년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87.4%) 및 2023 과세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86.8%)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16] 향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및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2026~2027년
(단위: 개)

	2026	2027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A)	179	200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A×46.0%)	82	92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17]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20~2024년

(단위: 개, %)

	2024 (1년차)	2023 (2년차)	2022 (3년차)	2021 (4년차)	2020 (5년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43	109	94	119	97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41	103	79	94	77
비중(B/A×100)	98.6	94.5	84.0	79.0	79.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표 18]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개)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81	78	69	65	65	
2027년 인증		91	87	77	73	73

주: [표 12]의 신규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13]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2024년 신고연도 기준 1기업당 감면액은 0.46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 이후 4년차 및 5년차에는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2023 사업연도 1기업당 감면액(0.46억 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합계(76.0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164개)으로 나눈 값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인증	37.6	36.0	32.0	15.1	15.1	
2027년 인증		42.0	40.3	35.8	16.8	16.9
합계	37.6	78.0	72.3	50.9	31.9	16.9

주: [표 14]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연차별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7.6억 원, 2032년 16.9억 원 등 6년간 총 287.6억 원(연평균 47.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누적	연평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85조의6 제2항)	37.6	78.0	72.3	50.9	31.9	16.9	287.6	47.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